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 시정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1 관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 2 감 사 개 요

| 날 짜           | 시 간   | 위원회 선정 감사대상기관                                 | 장 소          | 비고 |
|---------------|-------|---|--------------|----|
| 2018.11.15(목) | 10:30 |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br>○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br>○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운영위원회<br>회의실 |    |

## 3

## 감사위원회 편성

| 구 분   | 소속정당  | 위 원 명 | 사 무 보 조 직 원                |
|-------|-------|-------|----------------------------|
| 위 원 장 | 더불어당  | 서 윤 기 | 수석전문위원 박 노 수               |
| 부위원장  | 더불어당  | 노 식 래 | 의사지원팀장 박 남 기               |
|       | 더불어당  | 이 영 실 | 전문위원 박 태 현<br>행정 6 급 김 석 기 |
| 위 원   | 더불어당  | 김 경 영 | 임기제 6 급 박 순 종              |
|       |       | 박 기 재 | 임기제 6 급 김 우 영              |
|       |       | 박 순 규 | 행정 7 급 강 택 기               |
|       |       | 양 민 규 | 임기제 7 급 윤 혜 진              |
|       |       | 오 중 석 | 행정 7 급 이 양 속               |
|       |       | 이 동 현 | 행정 7 급 김 덕 영               |
|       |       | 임 종 국 | 시간선택임제(리)급<br>속 기 사 2명     |
|       |       | 한 기 영 | 음 향 요 원 1명                 |
|       |       | 홍 성 룡 |                            |
|       | 자유한국당 | 이 성 배 |                            |

## 4

## 주요 감사 사항

| 기관명                         | 감사방법   | 주요 감사 사항   |
|-----------------------------|--|--|
|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br>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자료 확인</li>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제출 요구</li> <li>○ 출석요구·증언(의견진술)</li> <li>○ 기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 주요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시장 보좌 사항</li> <li>○ 시의회, 내·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협치 사항</li> <li>○ 주요 추진사업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대국회, 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li> <li>○ 시정 주요정책 등의 조정협약에 관한 사항</li> </ul>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자료 확인</li> <li>○ 현황보고 청취</li> <li>○ 질의·답변</li> <li>○ 서류 제출 요구</li> <li>○ 출석요구·증언(의견진술)</li> <li>○ 기타</li> </ul> | <p><b>&lt; 언론홍보실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li> <li>○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대변인실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협력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li> <li>○ 뉴미디어 홍보 총괄 및 이슈모니터링에 관한 사항</li> <li>○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li> <li>○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의정홍보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li> <li>○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li> <li>○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li> </ul> <p><b>&lt; 의정담당관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li> <li>○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li> </ul>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요 감사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사무처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감사, 심사분석, 사무개선업무 등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li> <li>○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li> <li>○ 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li> <li>○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li> <li>○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 대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다른 부서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p><b>&lt; 의사담당관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li> <li>○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li> <li>○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청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li> <li>○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처리에 관한 사항</li> <li>○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사용조정에 관한 사항</li> <li>○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li> <li>○ 의사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전산실·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요 감사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li> <li>○ 의장의 조례·규칙 공포 및 예규·규정 발령에 관한 사항</li> </ul> <p><b>&lt; 시민권익담당관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민원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민원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li> <li>○ U-신문고 시스템(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전화·방문 민원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li> <li>○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민원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li> <li>○ 민원통계분석에 관한 사항</li> <li>○ 민원접수 상담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민원 및 시민권익에 관련된 사항</li> </ul> <p><b>&lt; 입법담당관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li> <li>○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li> <li>○ 법령·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 의회 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에 관한 사항</li> <li>○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조사회답에 관한 사항</li> </ul> |

| 기 관 명 | 감 사 방 법 | 주요 감사 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입법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입법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li> <li>○ 의원연구단체 및 정책위원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의회전문도서관의 운영 및 의정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li> </ul> <p><b>&lt; 예산정책담당관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li> <li>○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li> <li>○ 국내외 재정정책 관련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 통합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li> <li>○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 관련된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li> </ul> <p><b>&lt; 기 타 사 항 &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이 의정활동 및 시정과 관련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li> </ul> |

## 5 감사 결과

### □ 총괄

| 감사대상기관                  | 계  | 시정·처리<br>요구사항 | 건의사항 | 기 타<br>(자료제출 등) |
|-------------------------|----|---------------|------|-----------------|
| 계                       | 95 | 44            | 38   | 13              |
| 서울특별시시장 비서실<br>및 정무부시장실 | 58 | 26            | 23   | 9               |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37 | 18            | 15   | 4               |

**시정·처리요구 사항** ----- **44건**

### □ 시장 비서실·정무부시장실 : 26건

1. 투자·출연기관의 직원 정수와 임원 정수를 비교해 보면 임원수가 많은 곳이 있는데 임원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임원이 장기 공백 상태인 기관이 있는데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2.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보면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부할 때 시의 원과 사전협의하고 형평성에 맞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3. 용산공원 버스투어 관련 시의회는 배제되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용산공원 관련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에 서울시 출신이 아닌 혁신적 인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람.
5. 공무원, 공기업 임원 및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데 혁신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람.

6. 특정인사가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용역을 수주하는 등 회전문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7. 민간 또는 타 자치단체와의 MOU체결이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8.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연도별 계획서를 보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으며, 문제점 개선 없이 양적인 부분을 확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예산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3년 동안 611만명의 외국인이 다녀갔는데 위탁 판매하는 티켓에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지방채는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발행되어야 하나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경향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피소사건이 많은데 서울시가 공사계약 위반 등과 같이 막대한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서 손실을 회수하여야 할 것임.
12.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범시행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해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차량 운행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
14. 여의도 한강공원 밤도깨비 야시장은 이용하는 시민들도 혜택을 보고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쓰레기, 음식냄새, 배달존, 음란텐트,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들로 인해 주변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음. 적극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5. 최근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09년 7월에 개정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관련한 특별법관련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소급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5년간 임대료 동결 등 과도한 부대조건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 점이 아쉽다고 생각하며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16. 남산터널의 경우 미세먼지와 매연으로 인해 혼잡통행료 징수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던지 개선책이 필요함. 또한 노동자분들에 대한 처우나 권익이 무너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람.
17. 지방의원,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이미 서울시는 2010년 서울시 각 부서에 공지했으나 여전히 자료제출시 이와 같은 사유로 자료 미제출 혹은 부실제출이 반복되고 있으니 시정바람.
18. 디지털재단 임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고, 다른 기관들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조치 후 보고해 주기 바람.
19. 뉴딜일자리가 공공근로 수준의 단순한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
2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출범한 자회사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등 정책이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므로 재차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해 주기 바람.
21. 시장 취임 이후 16회 걸쳐 조직개편을 시행했는데 빈번한 조직 개편이 고위직 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는 오해가 언론에 비취지지 않도록 근본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시의 관련 상임위 소관부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해주기 바람.
22. 조직개편에 따른 각 업무담당자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대한 고려를 충실히 이행할 것.
23.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장기 공백사례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음. 이들 인사를 시의성과 타당성 있게 결정해서 업무에 차질이나 공백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추후에 보고해주기 바람.
24.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절차를 개선된 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육아휴직, 국외훈련 등에 있어 임기제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처우의 차이가 없도록 개선할 것.

25. 자치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정작 해당 시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26. 서울시 발주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예산증액 관행을 개선할 것.

## □ 시의회사무처 : 18건

1.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기간이라도 주말에 직원식당 방향에서 의원회관 2층으로 통하는 출입문 개방 검토 바람.
2. 학술연구용역 적격 심사시 이행실적 평가 미실시 사유.
3. 의원회관이 10시면 소등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기간이라도 소등시간 조정 검토 바람.
4.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최저가로 낙찰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5. 별관2동은 출입증이 없으면 통행이 불편하고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만 이용 하도록 되어있어 개선이 필요함.
6. 입법지원관의 채용방식이 실무와는 동떨어져 개선이 필요하고, 더불어 체계 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이 시급함.
7. 의정활동 홍보광고 예산 집행률이 낮음. 의정활동 홍보광고 사업을 효율적·상시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8. 여론조사 실적을 보니 특정 지역, 특정주제에 치우친 것 같은데 전체 의견 수렴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함.
9. 특별위원회에 대한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청년특별위원회 지원금 지급 검토 바람.
10.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규정」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라급)’에 대한 대외직명 (입법지원관) 명시 검토 바람.
11. 계약투명성심의회와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는데 개최실적이 저조한데 관련 조례가 의미 없는 것인지 검토 바람.
12. 제9대 의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고의 미반납의 경우 개선책 마련 바람.
13. 퇴직금 지급기간 준수 철저 바람.

14. 시립미술관 주차장 이용시 후문 출입구가 입차는 되는데 출차는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15.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3조②항에 규정된 의원의 누적출석일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범위, 방식에 대해 검토 바람.
16. 계약투명성 심의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여부 검토 바람.
17. 행정사무감사 관련 책자를 적정부수만 인쇄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
18. 위원회관 9층 샤워실의 샤워꼭지 물줄기가 약하므로 조치가 필요함.

## 건의사항

----- 38건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23건

1. 시의회와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주시기 바람.
2.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조례가 있음에도 의회와는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투자·출연기관 대표들에 대한 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을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전국체전 100주년 서울-평양 공동개최 추진 방안에 대해 차질 없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람.
5. 시의원들이 광역을 대표해서 뽑힌 만큼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6.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보좌진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람.

7. 시장이 시의원들과 원만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기 바람.
8. 최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에서 보았듯이 공사를 시행할 때 지질이나 지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조사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모든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질과 지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 별정직 채용에 있어 적절한 경력을 갖춘 인사를 채용해 주기 바람.
10.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등 시장 보좌 조직들이 직책에 맞는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람.
11.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유사한 질의나 답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따로 없고 연초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의 조치결과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국회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실명제 도입과 함께 각 상임위별로 시정조치 결과를 관리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시의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를 특정하게 명시하여 지속적인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12. 시의원과 시장의 면담창구를 일원화하고 면담자료 및 결과를 데이터화 해서 시의회와 더 소통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13. 청년자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직속기구로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일자리, 주거, 그 외에 건강, 보건의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 내용들은 전혀 다른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년자치정부 발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청년정책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청년자치정부의 일원화 또는 자치정부 안에서의 청년의 모든 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조직을 구성해 주었으면 함.
14. 청년의회가 제시하는 안전이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
15. 업무부담 등으로 자살하는 직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16. 지난 10월 18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시청사에 기자회견을 하러 진입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 등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청사방호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이 미숙하였음. 관련해 유감표명을 해주기 바람.
17. 지난 해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간 소통과 협치를 위한 조례에 보면 의장과 단체장은 지역별 주요현안 및 예산사업에 대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음. 이 조례에 명시된 협의체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의회와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음. 특히, 교섭단체 대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더 많이 해서 시의회와 협치가 좀 잘되도록 힘써주기 바람.
18. 행정사무감사를 잘 모니터링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각 부서마다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장의 시정철학이 모든 부문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19. 임기제공무원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잔여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함. 시금고로 새롭게 결정된 신한은행과 협의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20. 도심차량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진입하여 나갈 때 징수하는 혼잡통행료를 진입할 때만 징수하는 등의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1.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라는 사회적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의회가 발을 맞추어 상호 견제와 감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람.
22.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함.
23. 제7기 민선 시장 이후 시의원 면담 실적이 1건인데 시정 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공유를 통해 발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히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함.

## □ 시의회사무처 : 15건

1. 지역구에 우편발송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 내부에 우체국 유치 검토 바람.
2.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충원 방안 마련 바람.
3. 상임위원회 회의장 모니터 설치 검토 바람.
4.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차량 구매 검토 바람.
5. 태블릿PC, 노트북 등 기능이 비슷한 기기 지급사유 및 1종만 보급 가능한지 검토 바람.
6. 법제지원팀의 입법지원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현 인원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7.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해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검토 바람.
8. 교류협력팀 현원 및 업무를 재정비 하여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 마련 바람.
9. 중증장애의원보조요원을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 한지 검토 바람.
10. 지난번 임시회 때에도 발언을 했는데 전문위원실이나 직원들의 업무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해주시기 바람.
11. 의회혁신을 위해 매년 일정 비율의 일반직공무원들을 외부로 전보 검토 바람.
12. 비용추계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개정 필요 검토 바람.
13. 조례상 비용추계 처리기간이 14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10대 의회 평균 처리 기간이 3.9일임을 감안, 조례상 처리기간을 평균처리기간에 맞추어 단축 검토 바람.
1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민원행정서비스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센터와 시민권익담당관 역할의 통합 검토 바람.
15. “업무처리규정”에서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사담당관으로 의안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조례 위배 여부 검토 바람.

**□ 시장 비서실 · 정무부시장실 : 9건**

1. 서울시 전체 지방채 발행 현황
2. 서울시에서 현재 소송 중인 사건 내역 일체
3. 비서실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의 관용차량 이용 관련 과태료 현황
4. 시의원들과 시장과의 면담 요청 내역(구두 또는 서면). 면담이 불가능했다면 불가이유 및 사유서 포함
5. 청년자치정부 실현 관련 시장 방침사항 자료 일체
6. 시의원이 참석한 간담회나 면담 내역 일체
7. 안국빌딩 신관과 구관의 임대료 비교 자료.
8.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비실명 처리 된 자료 실명 처리하여 제출 바람.
9. 제9대, 제10대 의회 임기 동안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시 시의원들에게 공지 또는 교부내역을 공유한 자료

**□ 시의회사무처 : 4건**

1. 의원체육대회 체육복 구매업체와의 계약서 및 영수증 첨부 제출.
2. 입법법률고문 현원 25명 명단, 임명연도와 최종학력 제출
3. 제9대 의원에게 제공한 노트북 등 반환된 물품 처리방법과 사용연한이 미경과된 사무기기 보유현황 자료 제출.
4. 시민권익담당관의 활동내역 제출